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1999. 6. 24

나. 제 안 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9. 6. 24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71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(99. 7. 3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세무국장 김인규)

가. 제안이유

○ 지방세법이 개정(1998. 12. 31 법률 제5615호)되어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율을 10,000원의 한도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주민세의 세율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 조정(안 제15조제1항제1호가목)

• 현행 : 3,000원 ⇒ 개정 : 4,000원

○ 안 제15조제1항 용어변경

• 개인 → 개인의 세율

• 법인 → 법인의 세율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없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요지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161호
의결년월일	99. 7. 8 (제71회)

제출년월일 : 1999. 6. 24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○ 지방세법이 개정(98. 12. 31 법률 제5615호)되어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율을 10,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주민세의 세율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○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 조정(안 제15조제1항제1호가목)

• 현행 : 3,000원 ⇒ 개정 : 4,000원

○ 안 제15조제1항 용어변경

• 개인 → 개인의 세율 • 법인 → 법인의 세율

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제1호중 "개인"을 "개인의 세율"로 하고, 동호가목 중 "3,000원"을 "4,000원"으로 하며, 동항 제2호의 제목 "법인"을 "법인의 세율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